

다른 개혁신교단으로의 은혜로운 이적절차에 관한 정책(개정안)

산 가브리엘 노회

2014년 7월 12일 개정

I.

A. 양심의 문제에 관한 불일치

1.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가 쌓아온 중요한 신앙고백의 표준을 통해, 신중한 검토, 기도를 통한 과정, 신실한 분별의 과정을 거쳐 여러가지 해석에 의한 결론들을 구분하게 되었다.
2. 여러 해 동안 특정한 문제들이 개신교 믿음의 본질적인 측면인지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것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해서도).
3. 규례서는, <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좋은 품성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여라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기독교인 개인과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F-3.0105.)
4.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음을 인정함에 구속이 되는데, 그것은 장로교인으로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B. 218차 총회의 권고안

2008년에 열린 218차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서, 노회와 대회가 개체교회의 “교인들과 협의하에 개체교회들의 분할, 해소나 해산”(규례서 G-3.0303b)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절차에 있어서 일관성, 목양의 책임과 책무, 은혜로운 증인, 개방성, 투명성을 담도록 개발하고 각 치리기관과 교회들이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였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지역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다른 부분들과, 교회일치(ecumenical)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 모두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 됨을 생각하여, 위 총회에서는 교단, 노회, 대회를 떠나고자 하는 개체교회들이 다음 원칙을 담은 절차를 따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1. 일관성: 노회에 위임된 해당 권한은 우리가 공유하는 믿음과 봉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따라 인도되고 그 모양이 갖춰진다.
2. 목양의 책임: 규례서 G-3.0303b 에서 규정한 바, 노회는 이적을 하려는 교회의 교인들과 협의를 해야하며 이것은 노회의 목양의 책임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다른 책임에 가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책무: 치리기관에 대한 책무란 신탁자로서나 연관된 사람으로서 갖는 이해관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들(규례서 G-4.01 과 G-4.02)과 한 개체교회 안의 분파에 관한 특정한 문제(G-4.0207)를 제기한다. 그러나 완전한 책무는 또한 다른 어느 것보다 “양떼를 돌보는” 일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
4. 은혜로운 증인: 우리가 믿는 바, 성경과 성령은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주의보다는 은혜로운 증인이 되기를 명하신다.
5. 개방성과 투명성: 처음부터, 이적의 원칙과 절차에 관해 열린 소통과 투명성만이 진실되고 질서있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며, 민사소송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된다.

C. 개체교회의 이적에 관한 노회의 권한

1. 노회는 개체교회를 해소시킬 명시적 권한을 갖는다(법률 용어로 노회만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 (G-3.0303b).
2. 오직 한 노회만이 한 개체교회를 해소할 수 있다(PCUS, 1976 년, 92-99 쪽, “Strong 과 Bagby 대 중남미 대회” 판례 (No. 1-1976)).
3. 규례서 G-4 에 따라, 노회는 교회 재산에 관련하여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할 권한을 갖는다. 노회는, 한 지역 노회가 재산을 가진 교회의 해소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미국장로교(PCUSA)가 이해관계의 한 당사자임을 인정할 책임이 있다. 또한 노회는 미국장로교(PCUSA)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행동을 해야 하고, 해소가 청구된 개체교회의 재정적 지위와 모든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신탁조항(G-4)에서 정한 수익자로서 행동할 책임이 있다.

D. 산 가브리엘 노회의 가치관 선언

1. 산 가브리엘 노회는 그 속한 교회와 장로에 헌신해야 하고 분쟁 중의 모든 당사자의 선의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수 많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산 가브리엘 노회는 서로를 받들고, 상대방의 정직함을 존중하며,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구하고 대표하며, 우리 각 교회와 신자들 간에 평화를 갈망하며 일치되기를 소망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많은 지체로 이뤄진 교회가 되기를 힘써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체들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교회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에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이뤄지는 우리의 조직적인 영적 연합에 필요할 것이기도 하다.
2. 장로교인들은 수 많은 문제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찬양하며 인정해왔다. 이러한 가치는 현재 규례서 F-3.0104 와 F-3.0105 에 역사적인 언어로서 기술되어 있다.

- 1 a. 우리가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는 평화와 화합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하며, 우리가 서로
 2 다른 입장에 설 지라도 그러해야 한다. 약속에 따른 본분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3 결을 떠난 교인들이 우리의 약속의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이에
 4 우리는 안수 서약식에서 그러한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5
- 6 b. 우리의 신학으로 이해할 때, “장로들은 단지 회중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7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대표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치리회의 투표를 통하되, 그
 8 전에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다수결로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F-3.0204)와
 9 (F.3.0205). 동시에 교회는 소수의 의견에도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장로교
 10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되었고, 또 항상 개혁되는
 11 교회”임을 인정한다. (F-2.0200).
 12
- 13 c. 때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될 때도 있다. 노회는
 14 모든 장로과 개체교회들이 다수의 투표와 지혜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15 복종”할 것을 권면한다. (G-2.0105 각주 11). 양심 상 그 어느 것에도 따를 수 없는
 16 경우라면 노회는 이러한 강한 양심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개체교회와 장로들이 다른
 17 개혁 교단으로 이적함을 통해 평화적인 탈퇴를 하도록 관대히 허락할 것이다.
 18

19 이러한 종의 직분과 격려와 지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회는 스스로 공급자의
 20 역할로 자리매김을 해 왔다. 미국장로교 규례서(the Book of Order of PCUSA)는
 21 G-3.0303 조항에서, 교회의 지리적 권역 전체에 걸쳐 그 교회의 선교와 치리를 위한
 22 모든 자원을 노회가 관리하도록 권하고 있다. 따라서 노회는 회원 교회들을 인도하고
 23 더 넓은 지역 공동체로 진출하여 가장 효과적인 전도 사명을 감당할 그들의 능력을
 24 모아, 그 지역 내에서 규례서 (F-1.00)와 조화되는 교회의 선교 전략을 개발할 책임과
 25 권한을 가지며, 아울러 교회들의 사역을 조정할 책임과 권한도 갖고 있다.
 26

27 **II. 미국장로교의 규례서에 따른 “신탁된 재산”이 산 가브리엘 노회에 의미하는 바에 대한**
 28 **상세한 설명:**

29
 30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재산은 그 법적
 31 명의가 법인체에 있든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든지 간에, 또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32 공의회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재산은
 33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 (G-4.0203)
 34

- 35 1.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서는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가 아니다.
 36 따라서 여러 개체교회가 서로 결속되고, 책임과 의무의 관계에서 연합되고, 전체 유익을 위해
 37 각자의 힘을 보태는, 그러한 개체교회들을 집단적으로 교회라고 부른다.” (G-1.01)
 38
- 39 2. 신탁조항은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됨을 반영한다. “교회의 하나됨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고,
 40 그것은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사명에 대한 신실함으로 표현된다.” (F-1.0302a.) 우리는 우리의
 41 하나됨과 진정한 관계가 우리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42 우리의 연합은 전도의 기초가 됨을 믿는다. (요한복음 17 장 20-23 절)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1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 함이다.
2 신탁 조항은 공동 사명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연합에 증거가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3 관해 서로에게 인내를 발휘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노회와 교회의 의무이다.
4

- 5 3. 신탁조항에서, 땅과 건물, 설비, 기타 금융자산을 포함한 개체교회의 재산은 미국장로교를 위해
6 신탁 보관 된다. 개체교회는 노회의 허가없이 그 재산을 팔거나 임대하거나 저당잡히지 못
7 한다. 또한 노회가 자발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을 보유한채
8 다른 교단으로 이동할 수도 없다. 총회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221-08 손해배상 사례 뉴욕
9 노회 v. McGee 등에서 밝힌대로 “수탁자 역할을 하는 노회는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10 예컨대 노회의 결정은 합리적이며 기록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
11
- 12 4. 또한 신탁조항은 대대로 교회가, 이전에 온 이들과 나중에 올 이들에게 의무를 지는 성도의
13 교통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다. 개체교회가 노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중요한
14 역사적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 또한,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교제는 제직들이
15 함께 한 것이자, 그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였고,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16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노회에서 분립을 바라는 개체교회가 신중하게 행동을
17 하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18
- 19 5. 신탁조항은 개체교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 위협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20 신탁조항의 규정의 강제성을 고려할 때, 노회와 개체교회 회원들이 모든 상호관계에서 은혜롭게
21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구하는 바, 겸손함으로 우리의 의견차이를
22 해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민사 소송에 의지하고 재산에 관해 공개된 분쟁을 이어갈 때 복음과
23 그리스도의 몸에 입혀질 해악을 피해야 한다.
24
- 25 6. 교회가 진실로 양심의 문제로 인해 떠나기를 소망할 때, 신탁조항이 미국장로교의 단체의
26 일부로 교회를 불필요하게 구속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7
- 28 7. 대개 노회는 신탁조항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한다. 만일 개체교회가
29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노회는 신탁조항에 근거하여서 캘리포니아 주 내 교회들을
30 위하여 확인된 것처럼, 문제가 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31 있다.
32

33 III. 상호 대화와 관계에 관한 약속

- 34
- 35 1. 우리 노회의 목적은 언제나 노회 내 모든 개체교회들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와 지속적인 관계
36 유지가 될 것이다. 노회는 교회들이 건강하고 성장하는 개체교회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37 지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교회를 위한 중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38
- 39 2. 요한 1 서 4 장 18 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40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41
- 42 노회는 이 말씀에 구속된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개체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그 개체교회 전체가
43 이러한 사랑의 정신에 참여토록 열심을 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때에 노회 지도자들과 자신의

1 염려를 나누는 것은 양심의 문제로 씨름하는 개체교회의 지도자들의 의무인데, 이 때 노회의
2 사명 뿐만 아니라 개체 교회의 최선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그 받을 응답이 기도와 대화와,
3 사랑으로 행함을 약속하는 것 중 하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 4
- 5 3. 우리 개혁교단의 전통을 살펴볼 때, 교회의 위대한 교리와 주제 간에는 널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6 차이가 존재하고, 다른 공동체들이 그들의 믿음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여러 교리를 이해하는데
7 유용하다고 여긴 특별한 이론과 모델 간의 차이도 아울러 존재한다. 개혁교단의 입장은 다양한
8 논리적 관점과, 내재된 불명확성에 대한 이해를 인정하는 정당한 형태의 “본질적 요소”를
9 수용한다. 양 쪽 모두에게 은혜로움이란 이러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10 것이다.

11

12 **IV. 노회와 개체교회를 위한 계약 절차**

13

14 A. 분쟁 합의에서 선호되는 방법으로, 노회는 민사 법원에서 합의 절차를 개시하기보다는—그로인해
15 고린도전서 6 장 1-11 절을 위반—회원들, 개체교회들과 계약을 통해 서로 간에 재산에 관한 의견의
16 불일치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17

18 B. 이러한 재산에 관한 의견 불일치의 합의 시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회는 회원, 개체교회들과 다음과 같이
19 계약을 맺는다:

- 20
- 21 1. 진실을 사랑 안에서 말하며, 공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할 것;
- 22
- 23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24 자원함으로 하며…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 장 1-5 절 말씀을 따라
25 목양의 정신을 구현할 것;
- 26
- 27 3. 미국장로교에서 이적을 하고자 하는 어느 목회자나 당회나 개체교회와도 목회자의 입장으로
28 일을 할 것;
- 29
- 30 4. 다른 교제 관계에서 “교회의 큰 목적”(F-1.0304)을 신실하게 따르려는 목회자나 당회나
31 개체교회를 상대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을 자제할 것;
- 32
- 33 5. 규례서 G-4.0203 규정의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라는 부분을 “교회의 큰 목적”(F-
34 1.03034)을 이루려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재산은 미국장로교를 위하여 신탁 보관됨도
35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 그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 넓은 의미의 재정적인 측면과
36 사명의 측면 뿐만 아니라 개체교회의 영적 필요부분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 37
- 38 6. 규례서 G-3.0301a 규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궁극적인
39 목표를 두고서 선교사역, 예언적 증거, 지도력 개발, 예배, 전도와 책임행정의 분야에서
40 개체교회들에 격려와 지침과 자원을 제공하는 일”에 관한 노회의 명시적 권한을 다음과 같이
41 해석하는 것. 즉, 교단의 수탁자로서 노회에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 있음을 성실히 기도로

1 준비하고 생각한 후에, 경우에 따라 한 개체교회는 재산과 금융자산을 가진채로 미국장로교에서
2 이적될 수도 있음을 허가하는 것.
3

- 4 C. 이러한 계약 사항을 염두에 두는 것은 권징조례에 수록된 사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5 교회의 사법절차는 세속적 사법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사법절차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
6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사법절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예 교인됨의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
7 영광을 돌리고, 불화와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 과정의 올바르고 신속하고
8 실속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 곧 교회가 권징을
9 행사하는 데서 나타난 권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또 벌하자는
10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다.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11 교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흠없이 나타날 수 있게된다.
12 모든 면에서 모든 당사자들에게는 절차적인 보호와 적법절차 원칙이 부여되어야 한다. (규례서 D-
13 1.0101 과 D-1.0102)
14

15 V. 노회와의 관계에 관한 절차의 개요

16 A. 초기 접촉과 대화

- 17
18
19 1. 어느 개체 교회가 미국장로교를 떠날 것을 고려할 정도로 교단과 심각한 의견차이가 있음을
20 노회 지도부가 공식 당회를 통해서 알게 된 경우에, 노회 공의회에서 구성된 PET(Presbytery
21 Engagement Team)와, 같은 목적으로 목양위원회에서 구성된 COMMT 는 그 개체교회가
22 교단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함께 혹은
23 순차적으로 당회와 모임을 가져야 하고 개체교회와도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해당
24 개체교회가 다른 교회들이나 노회들이 결론을 내릴 때 안내 받은 절차와 가치 뿐만 아니라 현재
25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 제공을 받고 있으며 노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잘 고지
26 받기를 위함이다.
27

28 PET 는 네 명에서 여섯 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적을 요구하는 개체교회와 노회 양쪽의
29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양 회원들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고
30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32 PET 는 미국장로교의 정책과 적용 가능한 판례에 관해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33

- 34 2. PET 는 기도와 대화에 힘써야 하는데, 그 중 대화는 대립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위한 가능한
35 단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행과정에서 화해와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총회의**
36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221-08 손해배상 사례 뉴욕 노회 v. McGee 등에서 밝힌대로, “이적을**
37 **정당화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38 **단순히 신학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미국장로교 내에서 공존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9 **규례서 F-3.0105 에서 밝힌대로, ‘좋은 품성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40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41 **기독교인 개인과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42

1 3. PET 는 화해의 가능성과 이적 결정이 내려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 등에 관해서 개체교회와
2 협의하여야 한다. PET 는 개체교회가 요구하는 노회 탈퇴의 과정과 가능한 결과의 개요를
3 설명해야 하고 교회와 대화할 때 가이드가 될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4

5 a. 이적을 요구하는 개체교회와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 간 분할 부분과
6 관련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개체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전체 개체교회로 하여금
7 상황이 허락하는 한, 기도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할 것.
8

9 b. 만일 PET 가 판단하기를,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를 통해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면
10 당회와 PET 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대화의 일정을 마련하고 그러한 대화가 성사되도록
11 해야 한다.
12

13 c. 교회 당회와 개체교회와 함께 혹은 따로 대화하는 가운데 PET 는 미국장로교를 떠날
14 것을 고려하는 교회에 대해 예상되는 영향을 공유해야 한다. PET 는 모든 교역장로들과
15 그들이 받는 혜택과 안수 상태에 관해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
16 논의를 통해 그들은 다른 개척교단으로 이적하는 경우와 노회와 미국장로교에 계속
17 남음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8

19 d.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희망하는 그룹과 다른 개척교단으로 이적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
20 있다면 PET 가 그러한 개체교회와 대화하는 목표는 PET 는 분립 이후에 가능한 양
21 그룹이 건강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도록 재정과 재산, 그 외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
22 논의하는 것이다. 검토할 것이다. 재산의 처리에 관해 모든 협상과 결정에는
23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교인들과의 직접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24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원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목회적 돌봄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25 노회의 책임이다. 만일 미국장로교 내에서 개체교회나 예배 공동체 형태로 남아 있을
26 그룹이 있음을 PET 가 확인하게 되면, 그 그룹이 그 개체교회의 다수를 이루는지 여부에
27 관계없이, 그 그룹이 사용할 유동자산과 재산의 유지를 포함해서, 그 그룹의 목회를
28 위한 필요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재산의 적절한 처분에 관해 결정할 권한은
29 노회에 위임되고, 노회는 여러 요소 가운데 특히 어떤 그룹이 해당 지역에서 예배와
30 증인 공동체로서 그 재산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31

32 e. 일련의 대화 후에도 PET 와 개체교회 지도부가 화해의 절차를 만들어내지 못 한다면
33 PET 와 개체교회 지도부는 이적 조건에 관한 협상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교단
34 가입과 관련하여 그 개체교회 교인들의 진의에 대한 확인절차도 개시해야 한다.
35

36 **VI. 개체교회의 이적 요구 절차**
37

38 A. 이적 조건 협상

39 노회에서 교회가 이적하는 것은 그 개체교회나 노회에게는 충격적인 일이다. 노회의 조치는 협상과 이적
40 절차를 통해서 목회의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PET 는 해당 개체교회의 당회가 선정한 개체교회
41 특별위원회(SCC)와 함께 이적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해야 한다. 이 경우 SCC 구성원들은 노회의
42 정치제도를 잘 아는 이들로 구성되는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PET 와 SCC 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적
43 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이다.

1
2 B. 다른 교단으로의 이적에 관한 조건
3

4 PET 는 개체교회가 이적하려는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인지 여부를 예비 심사해야 한다. 살렛
5 노회에서 발행한 권위적 해석서 07-13(Transfer of Ministers and Congregations to Transitional
6 Presbyteries-From the General Presbyter/Stated Clerk)(이하 “이적에 관한 권위적 해석서”)에
7 따르면, 한 법인이 개혁 교단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있다.
8

- 9 1. 이 교단이 노회가 인정하는 개혁 신학과 본질적인 면에서 교리적으로 일치하는가?
10
11 2. 이 교단이 형태와 구성에 있어서 미국장로교의 그것과 일치하는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12
13 3. 이 교단이 해당 개체교회가 사실상의 독립체로 이적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정도로
14 충분히 영속성을 띠고 있는가?²
15

16 노회가 개체교회를 해당 교단에 이적시키려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그룹을 위 기준을
17 만족하는 개혁교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개체교회는 독립교회로서 이적될 수 없다. “Strong
18 & Bagby 대 중남미 대회” 판례에 따라 개체교회는 오로지 노회의 공식 조치를 통해서만 이적이 가능하다.
19

20 미국장로교 정치제도(연관된 “권위적 해석(유권해석)”을 포함해서)에 따르면, 노회에서 이적하고자 하는
21 개체교회는 그 미국장로교 정치제도에 부응하는 개혁교단으로 노회가 인정할 때에만 재산을 보유한채로
22 이적할 수 있다. 해당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인지를 평가하는 동안, PET 는 해당 교단이 규례서 G-
23 4.0203 의 신탁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신탁 조항을
24 강제할만한 일관된 규범과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만일 해당 교단이 유사한 신탁조항을
25 갖고 있지 않거나 그러한 신탁조항을 강제할만한 규범과 사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적의 조건에는 그
26 재산이 이적해 간 개혁 교단의 기관인 교회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미국장로교로 반환되어야
27 하는 전환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29 만일 노회가 해당 교단을 ‘허용되는 개혁교단’으로 이미 승인을 했다면 이러한 예비 심사는 사정 변경이
30 있는지, 즉 해당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31 이 경우, PET 가 해당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PET 는 노회의 동의를
32 구하기 위해 보고해야 한다.³
33

34 만일 노회가 해당 교단을 ‘허용되는 개혁교단’으로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면 PET 팀의 이러한 사전
35 심사에는 관련 문서, 조사, 심사 내용, 그리고 (만일 PET 가 해당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으로

² “이적에 관한 권위적 해석서”에 따르면, 이적을 허가하는 노회에게 어느 교단이 자격을 갖춘 개혁교단인지를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하지만 해당 노회는 모든 미국장로교에 대한 수탁자의 지위에서 행동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노회 스스로(하부 그룹에 위임하지 않고) 이적 예정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인지 여부를 살살이 조사하고 충분히 만족할만큼 증거자료로서 입증해야 한다.

³ 이러한 주의사항은 아픈 과거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1982 년 세계 개혁교회 연합은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이단적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남아공 개혁 교회와 네덜란드 개혁 교회를 축출한 바 있다.

1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라면) 노회가 일정 기간동안 연구와 토론을 거쳐 해당 교단이
2 '허용되는 개혁교단'인지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 실질적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4 어느 교단이 (사전에 노회로부터 '허용되는 개혁교단'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되는
5 교단임을 PET 가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PET 는 해당 교회가 이적하고자 하는 '허용되는
6 개혁교단'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 절차를 보류할 것을 SCC 에게 권고해야 한다.

7
8 C. 재산을 보유한 체로 개체교회가 이적하는 경우

9
10 1. 노회는 규례서에 근거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결정하는 맥락에서(G-
11 4.0201) 재산권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구역에서(G-3.0303a) 지역(G-3.0303a) 내 특정
12 개체교회를 이적시킬 정도의 넓은 재량권을 가지기도 하고 동시에, 노회는 모든 재산의
13 수익자인 미국장로교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탁조항(G-4.0203) 상의 수탁자의 의무도 다해야
14 한다. “툼 대 샌프란시스코 노회”의 손해배상 사례에서 언급된대로 “신탁조항은 대대로 교회가,
15 이전에 온 이들과 나중에 올 이들에게 의무를 지는 성도의 교통이라는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다.
16 개체교회가 노회를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중요한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 또한, 성도의
17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한 교제는 제직들이 함께 한 것이자, 그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였고,
18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애정을 가질 수 있었다.” 노회는 관할구역에서 예수
19 그리스도의 선교를 결정하는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많은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예를
20 들어 개체교회와 공동체가 영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규례서에 나와
21 있는대로 표지, 특징, 교회의 큰 목적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노회는 개체교회의
22 **특유한 상황**, 재정적 지위와 **필요**, 건물의 **역사와** 감정가액을 검토해야 하고 재산의 처리와
23 관련한 모든 결정에서 미국장로교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과 그 재산으로 얻는 혜택도
24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는 상호 용인 하에 교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5 의논하는 것도 포함된다.

26
27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의무에는 먼저 온 이들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인
28 관계에서 모든 중요한 요소를 고려할 때) 나중 올 이들에 대한 책임 (미국장로교가 그 재산을
29 나중에 사용할 것을 고려할 때)도 포함된다. 또한 노회의 의무에는 미국장로교에 남고자 하는
30 해당 개체교회 내 그룹이 계속해서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이 문서의 V 장, A3d 문단 참조.) 총회의 상임사법전권위원회가 221-08 손해배상 사례 **뉴욕**
32 **노회 v. McGee** 등에서 밝힌대로 “노회는 신탁조항에서 요구되는 수탁자로서 주의의무를
33 수행하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이적을 바라는 각 개교회에 해당하는 적절한 기한 안에, 그
34 교회에 맞는 차별화 되고 특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탁조항 상 수익자의 지위에서
35 미국장로교가 부담하는 책무로서, 그러한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문서로 된 사실에
36 근거해야만 한다.”

37
38 2. 보통 PET 는 이적을 바라는 개체교회로부터 최소한 다음 정보는 얻어야 한다:

39
40 a. 다음 사항에 관한 개체교회의 역사. 즉, 최소한 그 교회가 어떻게, 누가 개척했는지,
41 예배를 드리는 장소, 개개 재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주요 건축 계획, 교회의 주요
42 역사, 그 외 다른 중요한 요소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b. 적어도 지난 5년 간 열린 모든 당회와 개체교회 모임에 대한 모든 의사록 사본.
- c. 모든 교회 운영 내용을 보여주는, 지난 5년 간의 모든 연간 보고서 사본과 (그러한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어도 지난 5년 간의 연간 재정 관련 문서. 아울러 그러한 문서에 관한 감사 보고서 사본.
- d.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지정된 증여, 기금, 혹은 다른 제한된 자기에 관하여, 그러한 제한에 관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 e. 교회 교인 명부의 모든 사본.
- f. 가장 최근 교회 인명록 모든 사본.
- g. 교회 법인의 정관, 수정 조항, 현재 개정된 내규.
- h.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회사에서 발행한 예비 소유권 보고서(교회가 비용 부담). 아울러 개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양도증서 사본도 포함.
- i. 재산을 입증할 서류 사본과 교회 재산에 대해 가입된 손해 보험 증서. 보험에 가입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일람표도 포함.
- j. 교회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각 부동산의 구획별 현재 감정평가.
- k. 교회 재산에 관련한 임대나 기타 다른 계약에 관한 사본(예를 들어, 통신탑, 시설 사용 계약, 기타 입주 계약, 교회와 무관한 유치원, 혹은 기타 별도 단체).
- l. 교회가 관리하는 지망생과 후보생 목록.

3. PET 는 또한 노회로부터 이적을 바라는 교회에 관한 다음 정보를 얻어야 한다:

- a. 노회, 대회, 총회에 전해지지 않고 보류된 기금의 액수를 포함해서, 적어도 지난 10년간 교회가 교단에 낸 1인당 기금, 일반 선교 기금, 공동 선교 기금에 관한 기록.
- b. 최소 지난 10년간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기록과 교회에 고용된 교역장로가 포함된, 계류 중인 기소, 조사, 혐의에 관한 기록.
- c. 이적을 구하는 교회로부터 반경 5 마일 내에 위치한 모든 미국장로교 교회와 개척교회에 관한 위치와 요약 정보.
- d. 장래 교회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측되는 재산에 관한 노회 공의회와 협의한 내용.

1 4. 앞 문단과 PET가 알고 있는 기타 정보를 근거로 얻은 정보에 대해서, PET는 다음 각 사항과
2 PET가 판단할 때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3
4 a. 역사적 관계의 중요성 (이전에 온 이들에 대한 책임):

- 5
6 1. 해당 교회가 미국장로교에 속해서 회원자격을 갖춘 연도들. 그 기간동안 그
7 교회의 상당수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 그러한 교단 소속 관계로 인해
8 부분적으로 그 교회로 이끌렸을 수도 있음.
9
10 2. 노회, 대회 그리고/또는 총회가 해당 교회에 직접(예를 들어, 차입금과 보조금,
11 상환 여부는 관계없이), 간접(가령 미국장로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통해)으로
12 행한 재정적 기여의 기록. 이 때, 교단의 어떤 재정 공급이 그 재산을 취득하고
13 개발하는데 이용되었는지 밝힐 것.
14
15 3. 교회가 교단에 낸 1인당 기금, 일반 선교 기금, 공동 선교 기금에 관한 기록.
16 보류된 기금의 경우도 포함하지만 꼭 그것에 제한되지 않음.
17

18 b. 미국장로교에 잔류하여 나중에 합류하는 이들을 위한 헌신과 책임을 다하기를
19 희망하는 교회 교인들을 포함해서, 해당 공동체의 요구를 만족시킬 교단을
20 존속시키기 위해 미국장로교가 교회 재산에서 얻는 장래 사용과 이익에 대한 대가:

- 21
22 1. 개척 중인 교회와 회중의 요구, 혹은 이적을 바라는 교회에 자리잡은 다른
23 미국장로교 그룹의 요구.
24
25 2. 교회 건물에서 반경 5 마일 내에 위치한 다른 미국장로교 개체교회(개척교회
26 개발과 교체 등을 포함)가 효과적으로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그
27 그룹 혹은 노회 자체적으로 그 건물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28 갖추었는지도 고려해서).
29
30 3. 해당 지역에서 다른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를 개발할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31 여부와 그러한 노력의 성공과 실패 사례.
32
33 4. 미국장로교가 장래에 이적을 구하는 교회 근처에서 다른 교회를 계획할
34 것인지 여부와 그러한 모험의 실현 가능성.
35
36 5. 이적을 바라는 교회의 재산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부채와, 그 교회가 그 부채를
37 떠안을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노회나 상임위원회에게 의무가
38 이전되는지 여부.
39
40 6. 이적을 고려하는 교회의 해당 개체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일부가
41 미국장로교와 함께할 가능성과 반대 입장인 ~~소수파의 범위~~ 그 그룹이 한
42 개체교회 혹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지속될 가능성.
4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c. 지난 10년 간 어떠한 미국장로교 위원회급의 조직에도 이전되지 않고 보류된 기금을 이전할 합의는 통상 이적 협상에서 합의 내용의 일부가 된다. 그러한 기금의 정확한 액수는 협상의 일부로 결정되고 이적 합의로 이어진다. 또한 대회나 총회로 이전될 몫의 기금은 개체교회가 이적 전에 직접 지급할 수도 있고, 이적 합의 조건에 따라 받은 기금에서 노회가 지불할 수도 있다. “1인당 계산된 지급이나 선교 기금에 대한 지급은 신탁된 재산의 가치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위한 만족할만한 대체 수단이 되지 못 한다.” (규례서 G-4.0203 과 통 대 샌프란시스코 사례).

d. 만일 이적을 바라는 교회가 대회나 기타 미국장로교와 관련된 교단에 미지급 차입금이 있다면, 혹은 노회나 기타 미국장로교와 관련된 교단이 제공한 담보 형태로 미지급 차입금이 있다면, 이적을 하기 전에 그 차입금을 갚아야 한다. 혹은 미국장로교 연관 단체 혹은 기타 차입금을 지불한 쪽이 만족하는 채권자가 그 차입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차입금 일부를 갚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공된 담보 포기가 될 수도 있다.

어떠한 미국장로교 위원회도 이적할 교회를 그 권한 아래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입금을 보유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교단은 그 교회를 관리할 위치에 있지 않고서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변제와 혹은 담보 포기는 이적 요구에 대한 노회의 조치가 있기 전에 이뤄져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노회의 이적 결정 투표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이적 유효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만일 PET가 보기에 유효한 변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PET는 SCC에게 차입금에 대한 유효한 변제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e. 이적의 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PET와 SCC는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교섭할 것이다. 해당 교회의 모든 부동산은 노회 혹은 대회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범위에서, 혹은 그 부동산들에서 노회, 대회 혹은 미국장로교가 등기된 이자를 받게 되는 범위에서, 그러한 합의는 적절한 권리양도 증서를 증거로 포함해야 하고 그 등기된 이자 교부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오직 모든 이적 조건이 존재할 때만 (교회의 지출로) 등기되어야 한다. 이적할 교단이 ‘허용되는 개혁교단’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PET가 이적할 교단이 상응하는 신탁 조항을 갖고 있지 않거나 설사 갖고 있다해도 그러한 신탁 조항을 강제할 만한 일관된 규범이나 사례가 없다면 이적의 조건에는 이적을 바라는 교회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적 단계에 적용될 복귀 내용을 담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등기하여야 하고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 복귀될 이익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 조건에는 이적 교회가 이적 유효일로부터 최소 10년의 기간동안 개혁 전통을 가진 교단의 회원 교회로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최종 합의 내용이 개체교회와 노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기 전에 모든 문서의 법적 검토를 거칠 것을 강력히 권한다.

f. 노회가 이적에 관한 투표를 하기 전에 심사와 토의를 거쳐 철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PET는 노회에 교회가 이적할 조건을 결정하는데 평가된 요소들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VII. 노회의 교역장로들의 지위

- 1. 노회가 개체교회를 이적시킨다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교역장로들의 권리와 지위가 고려되고 제대로 다뤄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 2. 교역장로들은 개체교회가 이적을 요구하는 개혁신교단으로 전속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속은 개체교회의 요청과 함께 요청될 수 있다.
- 3. 원하지 않게 이적 상황을 맞은 교역장로들은 그들의 지속적인 사역을 위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4. 다른 개혁신교단으로의 전속은 보통 승인이 될 것이다. 다만, 교역장로가 사법적 절차나 조사 절차에 계류 중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회의 처리 절차에 있는 교인은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고 필수적인 배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이전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전속은 완료될 수도 있으나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적절한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위원회 혹은 사법 소위원회의 기록이 이전 전에 다른 교단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 5. 노회는 각 교역장로의 이적에 관해 개별로 투표해야 한다.

VIII. 이적하는 개체교회 교인들의 지위

다음의 사항이 중요하다. 즉, 이적 절차에서 SCC 와 PET 양쪽은 개체교회 내에서 탈퇴를 원하는 이들과 미국장로교에서 남기를 원하는 교인들 사이에 불화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를 다하여 소통해야 한다. 개체교회와 **적절한 협의와** 노회의 **공식적인**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모든 교인들은 교인 지위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아야 한다. 노회 목회 팀을 섬기는 **섬기거나 혹은 다른 교단내 사역을 맡았던** 이적 교인은 개체교회의 이적 유효일에 공식적으로 근무 기간이 종료되고 더 이상 어느 노회나, 남가주와 하와이 대회, 미국장로교 공의회, 목회 팀, 위원회, 소위원회, 특별 팀, 기타 다른 대표 모임을 섬길 자격이 없다.

IX. 노회의 관리에 들어가는 교인들의 지위

사역을 준비하고 노회의 관리에 있는 개체교회의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리 하의 각 교인들은 목회준비 위원회(CPMMT)의 연락망 하에 개체교회의 이적 요구를 즉시로 통보받아야 한다. 또한 개체교회와 이적할지, 노회와/혹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다른 개체교회의 교인자격을 얻어 전속할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만일 노회/미국장로교 내부의 다른 개체교회로 전속이 접수되면 PET 와 CPMMT 연락망은 노회 직원과 공동으로, 해당 교인의 관리 지위 유지를 위해서 교회 회원자격을 위해서 통상 요구되는 6 개월의 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X. 교회 기록, 기호, 미국장로교 확인

1 G-30107 에 명시된대로 “어느 공의회가 존속하지 않게 될 때, 그 기록들은 종결 이전에 하위 공의회가
2 속해있던 구역의 차상위 공의회 재산이 된다.” 따라서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록과 교인 명부, 그 외 기타
3 미국장로교와 그 전 소속으로서 미국장로교에서 탈퇴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기록된 모든 교회 기록의
4 원본은 산가브리엘 노회의 공식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본 문서는 영구보존을 위해서 장로교
5 역사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개체교회가 원한다면 해당 개체교회의 부담으로 장로교 역사협회와 협의하여
6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7
8 미국장로교의 인장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교단에서 탈퇴한 날 이후로는 미국장로교의 공식 인장과
9 이름은 모든 재산, 건물, 간판, 용지, 그 외 기타 외부 행사에 사용될 수 없으며 제거되어야 한다.

10 11 **XI. 노회와 개체교회 사이 협상의 목적**

12
13 이 절차가 이적을 바라는 개체교회를 노회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개체교회의 목회에 미치는 영향이
14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노회의 선교와 목회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15 방향으로 개체교회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노회가 사역을 유지하는 능력은 경제적 상태에 달려
16 있는 것을 이적할 개체교회가 인식하며, 노회를 떠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리
17 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18 19 **XII. 철회의 조건 협상**

20
21 미국장로교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포기할지 말지는 규례서와 교회법원의 결정에서 규정된 것처럼
22 미국장로교에 대한 수탁자로서 관리자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서 노회가 결정할 것이다. 또한 노회는
23 미국장로교의 사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역 자산, 부동산, 재정 수단들을 분배할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24 아울러 “필요한 주의의무에는 개체교회의 영적 필요 뿐만 아니라 개체교회의 재정적 지위와 재산의 가치에
25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툼 대 샌프란시스코 노회). 따라서 해당 개체교회가 탈퇴를 원하고 부동산은
26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리고 화해가 불가능하고 남은 그룹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27 않다고 PET 가 결정한 경우에는 PET 와 SCC 는 조건을 협상하게 되는데, 그 조건을 근거로 노회는
28 개체교회에 대한 미국장로교의 재산의 신탁적 이해관계를 포기할 것이다.

29
30 이러한 조건은 노회의 선교 사역 전략을 반영해야 하며 최대한 노회와 개체교회 양쪽에서 진행 중인 사역을
31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PET 와 SCC 는 상대방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 이적의 조건을 협상할
32 수 있다. 협상 과정에서, PET 는 또한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인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이다. 협상
33 과정에서 PET 와 SCC 에게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원치않는 방해받지 않고 가장 최적인 상호 합의를
34 결정할 재량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각 당사사는 최종 합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각의
35 리더들과 상의할 수도 있다.

36
37 교회 재산의 장래 사용이나 소유권에 관계된 모든 문서는 떠나기를 바라는 개체교회의 부담으로 노회를
38 대신해서 변호사가 심사하고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

39 40 **XIII. 이적요청에 대한 개체교회의 요구와 인식에 대한 확인 절차**

41

1 PET 와 개체교회의 SCC 가 만나서 이적 조건을 협상한 이후에, 다음 단계는 개체교회의 이적 요구를
2 확인하는 것과 그 결정에 있어서 그 개체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개체교회의 투표를
3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개체교회 모임의 절차와 정족수는 개체교회의 내규에 의해 정해지는데, 보통 PET는
4 이적 합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고 미국장로교를 떠나는데 대해 투표가 이뤄지는 경우
5 개체교회 모임을 위한 출석자 활동 중인 교인의 최소 50%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활동 중인
6 교인의 숫자는 가장 최근 총회 의사록 파트 II B 통계 자료에 보고된 숫자에 따른다.

7
8 PET 와 개체교회의 SCC 가 만나서 이적 조건을 협상한 이후에, 다음 단계는 이러한 조건에 근거해서
9 개체교회의 이적에 대한 희망을 노회가 확인하고, 그 결정에 있어서 그 개체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는 것,
10 그리고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희망하는 교인들의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11 산가브리엘 노회는 자문을 위한 회의와 개체교회의 “의향을 묻는” 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비준여부를
12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은 노회가 그러한 문제(G-3.0301a)를 해당 개체교회와 상의해야 하는 의무에서
13 필수적인 부분이다. 보통 노회는 이적 합의의 조건과 미국장로교를 떠나려는 명시적 요구를 확인하는 자문을
14 위한 회의의 경우 개체교회에서 활동 중인 교인 중 최소 50%는 참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15 활동교인의 수는 가장 최근 총회 회의록 Part II B 통계편에 기록된 숫자여야 한다.

16
17 이러한 개체교회 모임은 자문을 위한 회의는 노회가 소집해야 하고 해당 개체교회의 비용으로 교인들에게
18 적어도 30 일 전에 공지가 되어야 한다. 또한 최대한 많은 공개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19 한다. 또한 PET 대표들이 이 모임에서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현 상태에서 개체교회가 사실에 근거한
20 결정을 내리고 기도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문제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21 PET 는 (만일 해당 목회자가 이적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목회자 외 다른 사람이
22 사회를 보도록 할 수도 있다. 이적 요구와 희망과 협상에서 합의된 조건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투표 결과 75%
23 이상 찬성이 나오면, 이적 요구는 확인은 노회 공의회 지도부 결정에 따라 정기 노회 회기나 특별 노회
24 회기에서 투표에 부쳐져야 한다 투표에 부칠 목적을 위해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25
26 이 회의는 G-1.05 에 나온 정기 공동의회와 구분되어야 하며, 이것은 노회가 G-3.0301a 에 따라 개체교회의
27 교인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다.⁴ 그러나 만일 그 개체교회가 법인으로서 법적인 결정을 한다면 그 회의는 그
28 교회의 정관과 내규에 따라 혹은 초과해서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체교회는 노회가 이적에 관한
29 조취를 취한 이후에도 그러한 법인으로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0 31 XIV. 개체교회 이적에 대한 노회의 투표 절차

32 33 A.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노회의 투표 절차

34
35 개체교회가 공식적으로 ~~노회/미국장로교로부터~~ 이적할 의사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내용을
36 투표에 부치고 이적에 대한 협상된 합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섹션 VIC8 에 나온대로 PET 리포트와 함께
37 이적 합의의 조건은 노회가 투표하기에 앞서 모임에서 미리 검토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이 열람이
38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노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각각 투표를 해야 한다. 1) 이적할 교단의 적합성; 2)
39 이적 합의의 조건에 근거한 개체교회의 이적; 3) 개체교회의 이적; 그리고 4) 교역장로들의 관계.

⁴ 그러한 회의에 관해서 다음 내용을 주목: “미국장로교에서 탈퇴하는 것은 공동의회에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고 노회가 그 개체교회의 교인들과 상담하는 것이 “그 개체교회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회의에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Sundquist 219-03, 200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노회 회의장에서 수정안을 통해 이적의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은 PET와 개체교회가 수 개월 동안 진행해 온 일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재협상 제안 이적을 위한 조건과 재협상 제안**은 이적 합의가 PET와 개체교회 사이에 선의의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담아 전체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합의 사항에 대한 토론과 투표에 앞서 수정안을 제한하는 투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3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적절한 토의와 토론 후에 합의의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개체교회를 이적시킬지 여부에 대한 동의안이 노회에 의해 발의되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협상된 조건에 근거해서 해당 개체교회의 이적을 부결시키면 **승인하지 않으면, 또는 토론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2/3의 찬성투표를 확보하는데 실패한다면**, PET와 SCC에게는 수정된 합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협상과, 그것과 함께 혹은 따로, 중재절차를 고려할 것이 강력히 요구된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하기를, 위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모든 당사자들이 선의로 따름으로 우리는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합리적이고 시민의 품격으로 우리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B. 교인의 전속 희망에 대한 결정

개체교회의 다른 개혁교단으로의 이적에 관해 찬성 투표결과 후 30일 이내에, 노회는 PET는 해당 교회 교인들에게 개체교회와 함께 이적할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들의 교적을 그 지역의 다른 개체교회로 **또는 노회 자체로** 이전해서 미국장로교에 남을 것을 선택하든지 알리는 편지를 준비해야 한다. 교회는 활동 중인 교인들에게 신속하게 그 편지를 발송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이 편지에서 응답 수신자는 노회로 안내 되어야 한다. 그 후 노회는 미국장로교에 남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선택대로 새로운 개체교회에 합류하도록 도움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노회가 이러한 이적에 대응해서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시작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노회 지도부는 미국장로교에 남기로 선택한 교인들과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특별팀을 선임해야 한다.

C. 이적 유효일

이적 유효일은 **이적 합의의 조건에 명기된 요구사항들이 완료될 때로 할 것이되, 어떤 경우라도 노회의 투표 후 90일째날 이후가 될 것이다.**

D. 이적의 완료

목회에서 귀중한 동료들이 떠나는 것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아픔임을 인식하며 노회는 이전 목회에 대한 감사의 시간과 이적 개체교회와 노회와 미국장로교의 모든 다른 개체교회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